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통 보

제 목 축산물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 미 실시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구, ○○군

내 용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9조(출입·검사·수거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(영업장의 출입·검사·수거)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7조,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,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·검사·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행정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등의 이행결과를 보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·검사·수거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관내 축산물판매업체,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33개 업소에 대한 출입·검사·수거 등 사후관리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

사후관리 대상 업소 중 23개 업소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실시 한 반면, 울산광역시 ○구청(○○○○단)과 ○○군(○○○과)은 아래 [표]와 같이 10개 업소에 대하여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)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1] 행정처분 업소 6개월 이내 출입검사 등 미이행 현황

연번	기관	업체명 (대표자)	처분일자	처분유형	업종
1	○구	○○○○○○직판장 (○○○)	2014-01-17	과징금부과	축산물판매업
2		○○축산 (○○○)	2014-05-19	영업정지	
3		○○축산 (○○○)	2014-07-03	영업정지	
4		(주)○○○○기업 (○○○)	2014-08-04	과징금부과	
5		(주)○○○○기업 (○○○)	2014-10-03	영업정지	
6		(주)○○○○유통 (○○○)	2014-11-17	영업정지	
7	○○군	○○식품 (○○○)	2015-03-09	영업정지	식육포장처리업
8		○○○ 축산 (○○○)	2015-09-24	영업정지	축산물판매업
9		○○○마트(○○축산) (○○○)	2016-02-01	과징금부과	
10		○○농장 (○○○)	2016-06-02	영업정지	식육포장처리업

조치할 사항 울광역시 ○구청장, ○○군수는

[주의]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